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

은행업감독규정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(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당해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)의 판매대행

제2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에 대한 안정자금가용금액의 비율(이하 “순안정자금조달비율”이라 한다) : 100분의 100 이상
5. 총 위험노출액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(이하 “단순기본자본비율”이라 한다) : 100분의 3 이상

제41조제2항 중 “전국은행연합회장이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. 다만, 감독원장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항목 및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.”를 “감독원장이 정한다”로 한다.

제48조를 삭제한다.

제65조제1항 중 “외화만기보유증권”을 “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”으로 한다.

제83조를 삭제한다.

제92조 중 “제48조, 제50조”를 “제50조”로 한다.

제93조 중 “제48조, 제51조”를 “제51조”로 한다.

제94조제1항 중 “제26조제1항제2호·제3호”, “제33조부터 제48조까지”를 각각 “제26조제1항제2호·제3호·제4호”, “제33조부터 제47조의2까지”로 한다.

제95조제1항 중 “제48조, 제54조”를 “제54조”로 한다.

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2조의2(외은지점에 대한 특례)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별표1의2 보완자본 중 “매도가능증권”을 “공정가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는 매도가능증권(이하 “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공제항목 중 “매도가능증권”을 “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1호 주4) 중 “만기보유증권”을 “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”으로 하고, “매도가능증권”을 “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”으로 한다.

별표 5 자본적정성 중 “단순자기자본비율”을 “단순기본자본비율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